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1

발의연월일: 2020. 6. 8.

발 의 자:김정호·윤재갑·최인호

김두관 · 한준호 · 박완주

홍성국 · 최혜영 · 민형배

전용기 · 김철민 · 김민철

양향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음.

해당 개정안은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를 '특례시'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, 행정 기구 및 정원,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·재정 운영의 자율성과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음.

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방도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인구 규모만을 규정,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

하고 있음. 정부의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면,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불균형과 차별이 확대,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

이에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,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,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,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·재정·경제 요건도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함(안 제17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
- 1.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- 2.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
-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특례시의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·재정·행정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

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본문 중 "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대도시 및 100만 이상대도시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제2항에 따른 특례시(이하"특례시"라 한다)와 인구 50만 이상대도시"로 한다.

제41조의 제목 중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"를 "특례시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 만 이상 대도시"를 "특례시"로 한다.

제42조의 제목, 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"인구 100만 이상 대도 시"를 각각 "특례시"로 한다.

제43조제3항 중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"를 "특례시"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	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
	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
	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	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
	"특례시"라 한다)의 행정, 재정
	<u>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</u>
	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
	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
	1.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
	이상 대도시
	<u>2.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50만</u>
	이상 대도시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른인구 50만 이
	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
	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
	정하며, 특례시의 인정기준은
	지방자치단체의 경제·재정·행정
	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